

#11. 상계와 계약 해제

안녕하세요. 이현섭 변호사입니다.

이번 글에서는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두 회사 간 발생한 분쟁 사례를 통해, 계약이행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 등 선이행 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.

특히 “**선지급금과의 상계(서로 갚을 금액 상쇄) 가능성**”과 “**제작된 물품의 임의 처분 가능성**”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.

CASE

A사는 B사와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. 이 계약에 따라 A사는 특정 제품을 제작하고, B사는 이 제품의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

하지만 B사는 약속된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았고, 여러 차례 기한을 미루다가 전체 금액 중 일부 (3,000만 원)만 지급하였을 뿐, 나머지 금액은 끝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

이에 A사는 B 회사에 공문을 보내 “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끝내고, B사에 공급하려고 제작한 물품을 재활용하거나 기부 또는 파기하겠다”고 알렸습니다.

A사는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.

1. **A사가 B사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B사가 준 선지급금과 상계(서로 갚을 금액을 상쇄)할 수 있는지**
2. **A사가 계약을 끝낸 뒤 B사의 동의 없이 계약상 제작한 물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지**

1. 상계 가능 여부

‘A 사가 B 사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B 사가 준 선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’에 대한 의견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

① 선이행 의무의 불이행

해당 계약은 B 사의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A 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의무(선이행 의무)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. 따라서 B 사가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.

② 계약 해제(끝낼 권리) 발생

B 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A 사는 계약을 위반한 계약을 끝낼 권리(해제권)가 생깁니다. 계약이 종료되면 A 사와 B 사는 더 이상 서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나, A 사가 이미 받은 선지급금은 더 이상 보유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B 사에 돌려줘야 합니다.

③ A 사의 손해와 상계

그런데 A 사는 B 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약 3,900 만 원의 손해(제조비용, 보관비용 등)를 입었습니다. 이러한 손해를 배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지급금 3,000 만 원을 B 사에게 돌려주는 것은 A 사에 지나치게 불리합니다.

민법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계를 허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. **따라서 A 사는 자신이 입은 3,900 만 원의 손해(채권)와 B 사에게 돌려줘야 할 3,000 만 원(채무)을 서로 상계(금액을 상쇄)할 수 있습니다.**

이 때 상계는 A 사가 "이렇게 하겠다"는 의사를 B 사에 알림(통지)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

민법 제492조(상계의 요건)

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.

2. 계약 해제 후 물품 처분 가능 여부

‘A 사가 계약을 끝낸 뒤 B 사의 동의 없이 계약상 제작한 물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지’도 살펴보겠습니다.

① 계약 해제의 효과

계약이 끝나면, A 사는 더 이상 물품을 B 사에 납품할 의무가 없어집니다. 이에 따라 A 사는 B 사로부터 수령하였던 선지급금(3,000 만 원)을 돌려주는 것 외에 물품 등을 제작, 납품할 의무가 없으며, 따라서 해당 물품을 소유자로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.

② 물품 임의 처분의 범위

이 물품을 재활용하거나 기부, 또는 파기하는 것은 A 사의 자유입니다. 다만, 해당 제품이 B 사의 특허 등 권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라면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
③ 주의할 점: 명확한 계약 해제 의사 표현

이 과정에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. A 사가 이전에 보낸 공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, B 사가 다른 주장(예를 들면, A 사가 계약을 해제한다고 한 적이 없다 등)을 하지 않게 하려면 B 사에 새로운 공문(또는 내용증명)을 보내어 A 사의 계약 해제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.

시사점

위의 사례로 살펴본 것과 같이, 기존 계약에서 '선이행 의무'가 불이행 되었을 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'상계'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.

계약이 해제된 상황이라면 이미 제작된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A 사에게 있지만, B 사의 지식재산권 등 법적 요소가 얽혀 있을 경우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. 다만,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는 공문 등을 통해 분명히 밝혀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. Copyright ©2025 SEUM Law.

이현섭 변호사

Partner

hyunsub.lee@seumlaw.com